

2024년 보수교육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

I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

□ 내용

-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주최하는 안전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경우,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·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(기존절차와 동일)

영역	교육명	시간	보수교육 면제 교과목	비고
안전 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육교직원 안전교육(필수) - 어린이집 안전관리,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,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,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유아 안전교육 등 	3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전과 건강 I, II • 안전과 건강관리 I, II • 안전과 건강 • 영유아 안전과 건강관리 •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	매 1년마다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동학대 예방교육 - 아동학대, 성폭력,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, 영유아기 정신건강(정상 및 비정상 심리, 성 발달 포함)관련 교육 등 	3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동학대 예방 I, II •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I, II • 아동학대 예방과 올바른 훈육 •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 •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	

※ 절차: ① 아동학대예방·안전관리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(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/안전공제회→시·도→교육기관)→②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(보수교육 대상자, 서식 II-13)→③ 명단 확인 및 교육 면제(교육기관)

- 단, 원장 사전직무교육 ‘아동학대 예방과 대처’ (6시간) 교과목의 경우, ‘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와 아동학대 대처 방안’ 수강은 면제되나, ‘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환경’, ‘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정책’ 은 수강해야 함

▶ 보수교육기관에서는 원장 사전직무교육과정 운영 시,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(6시간) 교과목의 경우,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시간(시간표) 및 강사(자격 충족한 자)를 배정하시기 바랍니다.

II ‘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’ 교차 인정

□ 내용

- (신설)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,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, 성폭력예방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

- (어린이집안전공제회 주최 보육교직원 안전교육)
 - 보육교직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‘보육교직원 안전교육’ 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- (보수교육기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 아동학대 예방교육)
 - 보육교직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경우, ‘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, ② 성폭력 예방교육’ 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
구분	내용		
기존	(어린이집 안전공제회) 보육교직원 안전교육(2시간)	→ 인정(면제)	보수교육 관련교과목
	(육아종합지원센터) 아동학대 예방교육(3시간)	→ 인정(면제)	보수교육 관련교과목
개정	(어린이집 안전공제회)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(3시간)	↔ 교차 인정 (면제)	보수교육 (관련교과목)
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background-color: #e0f0e0;">보수교육 (관련교과목)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→ 인정(면제)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background-color: #fff9c4;">(육아종합지원센터) 아동학대 예방교육 (3시간)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↘ 인정(면제)</div> </div>	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background-color: #e0f2f1;">(법정의무교육)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(1시간)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background-color: #e0f2f1;">(법정의무교육) ② 성폭력예방교육(1시간)</div>

□ 법정의무교육 인정 조건

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(아동복지법 제26조)

- (인정 조건) 교육시간, 교육내용, 강사진 자격 충족 必
 - (교육시간) 연 1회, 1시간 이상
 - (교육내용) 아동학대 신고의무 및 아동학대 예방, 영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, 성폭력·실종 예방
 - (강사진 자격)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의 자격 기준 충족 및 강사진 양성교육 이수

- 아동보호전문기관,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, 아동보호 등 관련 업무 종사자
- 국가 및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유관업무 담당자
- 중앙부처(지자체)의 장이 인정한 아동복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, 그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강사
- 아동복지 유관기관의 정책개발, 상담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해당 경력 3년 이상인자
-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
-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, 강의 경력자
- 아동학대 관련 광역전담의료기관 아동보호위원회 위원 및 간사
- * 아동복지 관련이란 아동복지론, 아동상담, 아동발달, 청(소)년 발달, 아동복지방법, 아동복지실습, 아동심리(학), 아동복지발달사 등을 말함(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)
- ※ (예외) 단, 복지부 별도 승인이 있거나 중앙부처/지자체에서 별도 강사자격 기준을 두고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그 강사자격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
- * 어린이집 교사, 방과후교육 모래놀이심리치료 강사 등은 위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

② 성폭력 예방교육(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시행령 제2조)

○ (인정 조건)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충족 必

- (교육시간) 연 1회, 1시간 이상
- (교육내용)
 -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
 -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예방에 관한 사항
 - 성폭력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- 그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사항

□ 법정의무교육 인정 위한 충족사항 준수 必

- 보수교육 운영 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, 성폭력 예방교육의 교육 시간(1시간) 및 내용, 강사진 자격(신고의무자 교육에 한해) 조건을 반드시 각각 충족하여야 함
- 특히,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의 경우, 강사진 양성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갖춘 자가 보수교육 관련교과목을 강의하여야 함
- ※ 기존 강사진 인력풀 공유(4월), 보수교육기관 추천 강사진 대상 추가 양성교육 추진 예정(4월)

▶ 보수교육기관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 사항을 6월까지 보완 하시어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.

□ 법정 의무교육 실적 제출 절차

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(아동복지법 제26조)

- (절차) 어린이집 → 시·군·구 → 「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」 입력
- (방식) 관리·감독 기관(1차 취합기관_시·군·구)은 각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·시설로부터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취합, 실적 정리 후 시스템에 입력 진행

② 성폭력 예방교육(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시행령 제2조)

- (절차) 어린이집 → 「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」 입력
- (방식) 어린이집 원장은 원내 보육교직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하여 증빙자료를 취합, 실적 정리 후 직접 시스템에 입력 진행

▶ 교육실적 입력 주체는 어린이집이나,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이 관련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기관에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▶ 법정 의무교육의 교육 실적으로 보수교육 수료증 +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하므로 보수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 이수자에게 관련 교과목의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Ⅲ 보수교육과정 개정

□ 개정 내용

- 보수교육의 품질 향상 도모 및 변화된 보육환경 반영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개정 완료 및 공포('23년 8월)
- (개정 교과목 등)

보수교육과정		개정 전	개정 후
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(기본/심화)		15과목, 40시간	10과목, 40시간
원장 일반직무교육(기본/심화)		16과목, 40시간	11과목, 40시간
특별직무교육*	영아	20과목, 40시간	10과목, 40시간
	장애아		12과목, 40시간
보육교사 승급교육(1,2급)		21과목(시험), 80시간	14과목(시험), 80시간
원장 사전직무교육		23과목(시험), 80시간	18과목(시험), 80시간

* 방과후 특별직무교육과정은 변동사항 없음

□ 적용시기

○ 2024년 1월 보수교육과정부터 적용 必

※ 개정 보수교육과정 개요를 반영하지 않고 '24년도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, 보수교육기관 평가 점수 최하점 부여 예정

▶ 개정 보수교육과정 매뉴얼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- 알림마당 - 사업관련자료 - 보육교직원 자격 - [기타]탭에서 확인 가능

IV | 보수교육 온·오프라인 병행 방식 도입

□ 개정 내용

○ 인성·소양 영역의 교과목*에 한해 '실시간 화상방식'의 온라인 교육 인정 가능

* 아동 인권 및 권리, 보육철학, 직무(직업)윤리, 정신건강, 리더십 등

○ 건강·안전/전문지식·기술 영역의 교과목은 현황과 같이 대면교육만 가능

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문의처 : 한국보육진흥원 자격관리부 담당자(☎ 02)6901-0298 / 0296 / 0291)



다. 보수교육 내용(p.224)

● 공통 사항

-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경우,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·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
 - ※ <서식 II-13>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에 명시된 교과목 면제 가능
 - ※ 안전사고 예방, 아동학대·성폭력·실종 예방 및 사후처리 중 해당 과목 인정

영역	교육명	시간	보수교육 면제 교과목	비고
안전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<u>보육교직원 안전교육(필수)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린이집 안전관리,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,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,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유아 안전교육 등 	3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<u>안전과 건강 I, II</u> ● <u>안전과 건강관리 I, II</u> ● <u>안전과 건강</u> ● <u>영유아 안전과 건강관리</u> ● <u>안전사고 예방과 대응</u> 	매 1년마다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<u>아동학대 예방교육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동학대, 성폭력,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, 영유아기 정신건강(정상 및 비정상 심리, 성 발달 포함)관련 교육 등 	3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<u>아동학대 예방 I, II</u> ● <u>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I, II</u> ● <u>아동학대 예방과 올바른 훈육</u> ● <u>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</u> ● <u>아동학대 예방과 대처'</u> 	매 1년마다

* 단, 원장 사전직무교육 '아동학대 예방과 대처'(6시간) 교과목의 경우, '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와 아동학대 대처 방안' 수강은 면제되나, '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환경', '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정책'은 수강해야 함.

※ 절차: ① 아동학대예방·안전관리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(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/안전공제회→시·도→교육기관)→②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(보수교육 대상자, 서식 II-13)→③ 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(교육기관)

※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,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가능

- 교육영역 별 이수시간을 고려하여, 보수교육기관에서 일부 교과목 선택하여 운영·개설 가능 (예시) 「보육활동 운영의 실제」와 「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」 영역의 경우 교과목 일부 선택 이수 가능
- 인성·소양 영역의 교과목에 한해 '실시간 화상방식'의 온라인교육이 가능하나, 건강·안전 / 전문지식·기술 영역의 교과목은 대면 교육만 가능
- 「건강·안전」 영역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은 심폐소생술,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 하도록 함
- 「건강·안전」 영역 교육에서 「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3에 따른 긴급지원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
- 특별직무교육 내 건강·안전영역에서 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
- 「건강·안전」 영역에 '식품알레르기, 아나필락시스 및 응급처리 등'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
- 「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 실제」 교과목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강사 Pool 및 교육자료 제공 등 교육 협조